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12

발의연월일: 2020. 7. 30.

발 의 자:기동민·김원이·한준호

강훈식 • 박용진 • 임호선

안민석 · 이정문 · 임종성

김병기 · 최인호 · 도종환

이학영 · 고용진 · 이상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차이에 따라 추가 결정·경정되는 경우 신고 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당해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법정신고기한까지로 평가기간을 두고 있음.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매매 등의 가액도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법정신고기한 이후인 법정결정기한까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 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음(2019.2.12. 개정).

그러나 납세자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확인된 가액으로 정상 신고하였음에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신고기한 이후 추가로 확인된 당해재산가액으로 경정하여 결과 적으로 상속세·증여세를 과소 신고·납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납세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납세자가 다양한 유형의 당해재산의 시가를 평가하고 신고하기에는 과세관청에 비해 납세자측의 정보 불완전성이 존재하기에 관련 납부 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에 납세자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정상 신고한 이후 매매 등의 가액이 확인되어 평가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해당가액으로 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4제3항제6호 신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 개월까지로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이 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 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 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 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 하여 대통령령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 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 시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경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안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 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 <신 설> 0조에 따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 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 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 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 매(이하 이 호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거나 평가기 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

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 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 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 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 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 청하여 대통령령에 따른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 당 매매등의 가액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되는 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 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경정하는 경우

④ ~ ⑨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